

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9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7월 31일

발 의 자 : 최 승 태 의원

1. 제안이유

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생활의 만족도 및 근무의욕을 높이고,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휴가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장기재직휴가,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 및 분할사용 횟수 제한 규정 삭제
(안 제27조, 별표 4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- 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- 마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6. 8. 3. ~ 8. 7.

- 제출방법 : 방문(주말·공휴일 제외), 우편, 팩스, 홈페이지
- 기재내용 : 붙임 서식 참조
- 제출기관 : 하남시의회(의회운영 전문위원실)
 - 주 소 :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(신장동, 하남시의회)
 - 전 화 : 031-790-6510
 - F A X : 031-790-6529
 - 홈페이지 : <https://council.hanam.go.kr/> (의안정보 → 조례안 예고)

하남시의회 조례 제 호

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9항 전단 중 “5일(2회분할)”을 “7일”로, “10일(3회 분할)”을 “15일”로, “20일(5회 분할),”을 “25일,”로, “20일(5회 분할) 간”을 “20일 간”으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1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출 산	배우자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)	20(25)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· 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탈 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* 비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7조(특별휴가) ① ~ ⑧ (생략)	제27조(특별휴가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의장은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<u>5일(2회분할)</u> , 10년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<u>10일(3회 분할)</u> ,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<u>20일(5회 분할)</u> ,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<u>20일(5회 분할)</u>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, 장기재직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.	⑨ ----- ----- <u>7일</u> ----- ----- ----- <u>15일</u> ----- ----- ----- <u>25일</u> , ----- ----- <u>20일</u> 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⑩ ~ ㉑ (생략)	⑩ ~ ㉑ (현행과 같음)